

(도시위원회 분야)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위원회 소관) 심사보고서

전문위원 이 무 상

이 안건은 1992.5.29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2 도시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1. 안 건 명 : 1992년도 도시분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소관 분야 : 도시정비, 지역교통, 토지관리, 건축, 건설

3. 제출 이유

- 0. 부서별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액및 정보비 증액 계상
- 0. 제세공과금, 공공요금, 학비 보조 수당 인상액 계상
- 0. 업무용 물품 구입 경비 계상
- 0. 도로교량건설 사업 추가 계상
- 0. 재해대책사업 추가 계상
- 0. 시비보조금 사업 추가 내시액 계상

4. 주요 골자(예산규모)

(단위:백만원)

구분	회계별	예산액	기정 예산액	증가 (금회추경안)	예산 증가율	비고
세입	일반회계	10,901	8,707	2,194	25.1%	
세출	일반회계	24,543	23,194	1,349	5.8%	

5. 검토 의견

가. 세입 주요 내용

0. 증가 요인 : 공유재산 매각수입, 시비 보조금 지원등

0. 감소 요인 : 일반 부담금 감소

0. 검토 내용

'임시적 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 98,010만원은 공유재산 18필지 791와 기타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얻은 수입이며,

'시도비보조금, 지역개발비 보조 178,441만원은 땅미1지구 주거환경개선 의 4건을 시행키 위한 시비내시액 보조금으로 세입이 증가되었으나,

'임시적 수입, 일반부담금 40,000만원은 건설과 시행 도로굴착 복구에 대한 세입 감소로 인한 부주의한 예산 편성의 결과로 판단됨.

'금후보다 세밀하고 정확한 판단과 예측에 의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 운영 의 효율화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첨부 : 1. 제1회 추경예산안 항목별 조사 설명서 1부.

2.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조사서 1부.

19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조사 설명서

1. 92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추경경정예산안이 5.8%증가하였는데 내용별로 보면,
일용인부 단가 인상으로 인해 0.5%, 도시국 업무 추진정보비 0.02%, 식비보조사업 추가 내시액 0.1%, 사업추가 7.5%, 사유로 인한 공사 취소 삭감이 4.8%가 증가되었다고 봅니다.
2. 일반회계의 증가는 일용인부의 단가 인상과 관련 인건비등 기본적 필요 경비 계상과 주민생활과 직결된 도로교량건설및 재해대책사업의 추가가 주원인이라 여겨지나 적정 수준과 사업 계산의 판단에 어려움이 많으며 증가되는 지출예산에 비해 앞으로의 세입예산이 불투명하여 세입 목표 달성 과 세원 발굴등으로 재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여야겠습니다.
3. 도시계획관리, 국내여비의 절감액 360만원은 절감액이 기정예산에 대해 12.5%를 차지하여 처음부터 과다 책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4. 과 부서의 일용인부에 관련된 인건비, 재료비 기탁 보상금, 정액수당등은 시예산 10200-44108(91.12.30)호의 '92. 지방자치단체 일용인부임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하여 단가 인상분에 대한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며, 기본경상비, 제세공과금은 인상분만큼 부족분을 추경경정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5. 도시정비, 자산취득비 25만원, 시설비 4,574만원, 운수행정지도, 연료비 39만사천원, 수용비및 수수료 1,000만원, 대수선비 90만원, 하수도사업 시설비 500만원, 도로교량건설, 시설비중 수영로 보도정비공사 1,200만원 토지매입비중 매입보상비 과다분 3,600만원, 재해대책시설비중 문현1동 산22-13 재해예방공사의 5건 17,259만원은 예산 절감 시책에 따라 집행후 남은 금액을 삭감하였고 운수행정지도, 수용비및 수수료중 방치 차량 신문 공고비 1,000만원은 시보 계제로 전액 삭감하였으나, 하천관리, 주요사업비, 시설비중 용호천 하수구 준설공사건은 집행 잔액 삭감이 2,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5,000만원과 대비하여 52%가 절감된 것으로서, 사업계획이 당초 무계획하게 짜여져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았나 생각되어 지며,
6. 주택기획, 주요사업비, 시설비 5,000만원, 교통안전관리, 시설비 24,8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 도로교량건설, 시설비중 도로굴착복구비의 4건 37,225만원, 토지매입비 3건 92,732만원은 주민복지와 불편 해소 차원에서 시행함이 타당하나 사업 경비의 책정및 수준이 적정한가를 신중히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며,
7. 도로교량건설, 주요사업비, 시설비중 감단1동 32통 신한주택앞 도로개설공사의 5건 47,326만원과 하천관리, 주요사업비, 시설비중 감포천 복개공사 57,200만원의 삭감은 사업시행의 연기또는 취소된 것으로서 주민의 일상 생활과 복지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앞으로의 집단 민원을 유발할 소지가 많은 것으로 신중히 검토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8. 정보비 647만원은 도시국 업무와 각종 시책을 원만히 수행키 위해 쓰여지는 필요 경비라 여겨지나 정부의 씬씀이 10% 절약운동에 적극 동참키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쓸 것을 유의해야 할 것이며, 이중 운수행정지도, 정보비중 불법 주정차 단속 요원 활동비 추가 반영은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며,
9. 운수행정지도, 물품구입비중 주정차 위반차량 증기확보용 사진기 2대 구입비 70만원, 도로교통관리, 자산취득비중 무선호출기 1대 구입 20만원과 공공요금 18만원은 업무처리를 위한 사무비품구입으로 이해가 되나 꼭 필요한가 구입가가 적정안가를 판단하여야 하겠으며,
10. 건축지도, 수용비및 수수료 건축민원 안내 홍보물및 민원서식 구입비 360만원에 대해 살펴보면,
 91년 회계년도에 미채정된 사항으로서 92년 회계년도에도 미채정되었는데 민원 서식, 홍보물 사용은 본 추경에 상정되므로서 타당성은 인정되나 담당 업무 처리에 무계획적이며 소홀한 면이 있지 않았나 사료되며 쓸 용도, 수량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92年度 第1會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修正案

1. 총괄

(도시여원외)

(단위:천원)

회 계 별	지방자치 단 체 제 출 액	수 정 안		금 회 승 인 액 (추경예산)	비 고
		삭 감	증 감		
계	61,335,167	50,000	-	61,285,167	일년적의개발 시설비중 포괄사업비 전년도대비 300%이상 증가 삭감 (삭감액 5천만원은 예비비로 전환)
일반회계	61,335,167	50,000	-	61,285,167	
특별회계	2,113,297	-	-	-	
의료보호 기 금	1,605,707	-	-	-	
영 세 민 생 활	204,734	-	-	-	
새 마 을 소 득	302,856	-	-	-	

2. 목별증감내역

(도시위원회)

(단위:천원)

구 목						지방자치단체 제출 예산액	수 정 안		수 정 예산액	수정이유 내역
장	관	항	세항	세상항	목		감액	증액		
5	지역 개발	지역 개발	일반 지역 개발	주요 사업비	시설비	300,000	50,000	-	250,000	포괄사업비 전년도대비 300%이상 증가 (과다 추정)